

조 정 조 서

사 건 [REDACTED] 이혼 등

원 고 [REDACTED]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

피 고 [REDACTED]

판 사
조 정 위 원 [REDACTED]

원고 및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

각 출석

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
출석

다음과 같이 조정성립

조 정 조 항

1.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
2.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.

가. 1)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, 2 부동산([REDACTED] 및 그 지상 건물)을 2025. 6. 30.까지 피고의 동의를 얻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다.

2) 원고가 2025. 6. 30.까지 위 1)항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제1, 2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, 가) 원고는 피고에게 2025. 6. 30.까지 매도가격에서 대출원금

1억 원의 담보대출원리금, 원금 2천만 원의 보증금 잔액, 양도소득세 등 제반 세금,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매도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고, 나) 피고는 원고에게 2025. 6. 30.까지 별지 목록 기재 1, 2 부동산에서 퇴거한다. 원고와 피고는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가)항의 돈 지급의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나)항의 퇴거의무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한다.

- 3) 원고가 2025. 6. 30.까지 위 1)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제1, 2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, 원고는 피고에게 2025. 7. 1.까지 별지 목록 기재 제1, 2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(위 절차 이행에 취득세, 등록세 등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2분의 1씩 부담한다).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은 후 그 즉시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(채무자 원고, 근저당권자 [REDACTED] 대출원금 1억 원)의 피담보채무 중 50%에 해당하는 부분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(위 피담보채무의 2025. 7. 1.까지 발생하는 대출금의 이자 및 상환수수료는 원고가 책임지고 부담한다). 만약 위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다.

나. 1)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 [REDACTED] 및 그 지상물을 2025. 6. 30.까지 원고의 동의를 얻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다.

- 2) 피고가 2025. 6. 30.까지 위 1)항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 및 그 지상물을 매도하는 경우에는, 피고는 원고에게 2025. 6. 30.까지 매도가격에서 양도소득세 등 제반 세금,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매도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다.

- 3) 피고가 2025. 6. 30.까지 위 1)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 및 그 지상물을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, 피고는 원고에게 2025. 7. 1.까지 별지 목

록 기재 제3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(위 절차 이행에 취득세, 등록세 등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2분의 1씩 부담한다).

다. 원고와 피고는 위 가, 나항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.

라. 1) 원고는 피고가 수령하는 국민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%에 대하여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, 나머지 50%는 피고가 수령하기로 한다. 즉 피고의 국민연금에 대한 원고의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%로 정한다.

2) 피고는 원고가 수령하는 국민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%에 대하여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, 나머지 50%는 원고가 수령하기로 한다. 즉 원고의 국민연금에 대한 피고의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%로 정한다.

마. 원고는 피고에게 2024. 7. 31.까지 [REDACTED] 차량([REDACTED]에 관하여 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.

바. 피고는 2024. 7. 31.까지 원고에 대하여 [REDACTED]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.

사. 원고와 피고는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마.항의 의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바.항의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한다.

아.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025. 6. 30.까지 500만 원을 지급한다.

자.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.

3.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, 재산분할,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,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(민사, 형사, 가사 등 모두 포함)도 제기하지 않는다(부제소합의).

4.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
5.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